

## 법령코너

###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152호
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8년 4월 8일  
기술표준원장

##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개정고시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3항 및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 안전감시원(이하 “안전감시원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기술표준위장과 유통되는 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기술표준위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 및 안전관련 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장감시”라 함은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또는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과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안전감시원”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과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안전감시원의 자격)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산품, 전기용품,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지
2. 제품안전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

제5조(안전감시원 교육 등) ① 기술표준위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
2.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
3. 위해제품 식별 요령
4.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·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

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감시원의 위촉) ① 기술표준원장은 소비사단체징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.

② 「품질경영 및 농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 및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사단체 등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상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혹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.

④ 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제7조(안전감시원의 해촉)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.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·폐기하여야 한다.

1.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
2.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
3.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
4.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
5. 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안전감시원의 운영) ① 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을 비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업무) ①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통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
2. 유통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
3. 시·도지사의 불법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
4.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·세분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
5.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

②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
2.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·분석
3.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

## 법령코너

제10조(활동수당 등 지급) ① 기술표준원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,000원으로 한다.

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실적보고 등)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보고하게 하고, 그 활동실적을 정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.

부칙(고시 제2007-61호, 2007.2.16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고시 제2008-15호, 2008.4.8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 - 113호

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4월 24일  
기술표준원장

##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입안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산업표준화법(법률 제8486호, 2007. 5. 25. 공포, 2008. 5. 26. 시행) 및 시행령,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, 서비스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요건을 추가하고, 산업표준화 교육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, KS인증시 소기업을 우대조치 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비스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요건을 신설(안 제14부터 16조까지 및 제21조 및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)
  - 인증 서비스분야 지정, 인증심시기준, 인증심시절차, 분야별 서비스품질관리단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나. 산업표준화 교육방법을 다양화함(안 제49조)
  - 산업표준화 교육을 집합교육, 원격교육, 실습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실시토록 함
- 다. KS인증 심사시 소기업에 우대(안 제16조 별지 10호 서식)
  - 품질경영 도입 확산, 친환경 경영유지, 설비별 적정한 온할관리 평가 등 소기업에 적용이 어려운 심사 항목에 대해 가점을 줌
- 라. 상의법령으로 이동된 조문을 삭제
  - 제1조(부회 등의 회의소집), 제15조(인증심사위), 제25조(인증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)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함

## 3. 의견제출

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최?만 이유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자료
- 라. 보내실 곳 :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
  -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교육위길 96 기술표준위(427-716)
  - 전화 : (02)509-7220~3
  - 팩스 : (02)503-7977
  - 전자우편 : hjs00@mke.go.kr

※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ts.go.kr>)의 크시·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